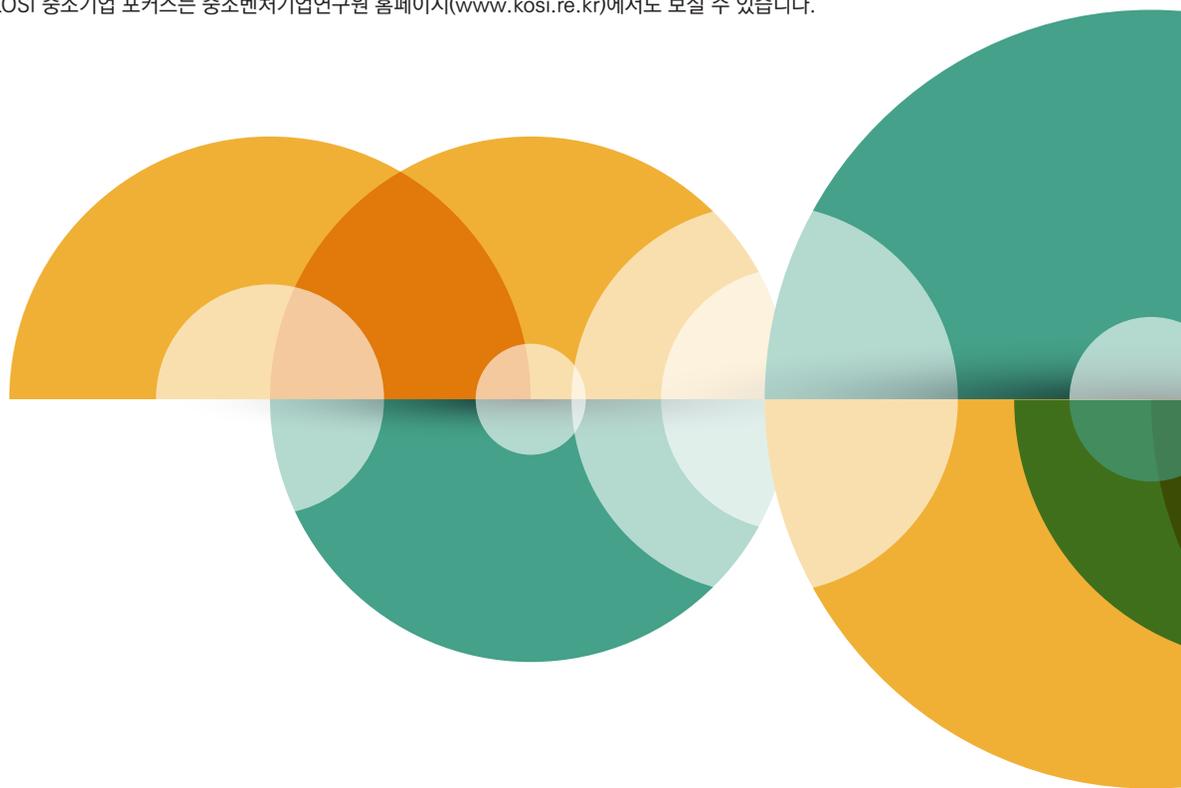


KOSI 중소기업 포커스

중기 규제개선 :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완화 방안

책임작성 | 김서연 선임연구원(02-6299-7937, sykim@kosi.re.kr)

※ KOS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(www.kos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

| 목 차

1. 서론
2. 규제현황
3. 규제연장 필요성과 순응도
4. 중소기업 규제개선
5. 시사점

| 요약

-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연장
 -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에 따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
 - 기 시행된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을 전부개정한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(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)
 -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과 더불어 세입 확충 등 관련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은 규제부담을 예상
-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 연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예상되며,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부담 완화 방안 마련 시급
 -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도입 이후 재활용률 2.6%p 증가, 폐기물 매립·소각률 4.7%p 감소하였으나 제도 시행기간은 5년에 불과한바, 시행 효과 판단을 유보
 - 해외국가들은 매립세를 도입·장기적으로 시행하여 평균적으로 매립률을 약 1.0% 수준까지 낮춘 반면, 국내 매립률은 약 5.1%로 5배가량 더 높음
 - 관련업계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이외 추가로 약 10%가량 부담금을 소요하므로 본래 도입 취지인 경제적 유인책과 달리 '준조세'로 인식하는 실정

■ **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고 부과율 형평성을 제고하여 기존에 규정된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현실화함이 바람직**

- 중소기업 감면 기준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의 이원화된 감면체계 구조를 개선하여 감면대상으로부터 제외될 가능성을 줄이고 규제부담을 완화
- 중소기업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감면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물가 상승 등 제반 경제상황 및 기업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감면 기준 현실화
- 부과율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간 동일요율을 부과한다면 연평균 약 356.7백만 원의 비용 절감효과 추정

1. 서론

-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때 부과·징수하는 제도임
 -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원·에너지 소비량, 폐기물 발생량 및 소각·매립량도 함께 증가하므로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이 시급
 - 하지만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나, 배출자는 단순한 폐기물 처분 방식인 소각·매립을 선호
 - 이에 폐기물 정책의 핵심을 ‘폐기물’에서 ‘자원’으로 바꾸고,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목적으로 「자원순환기본법」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도입
- 탄소중립과 더불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경영 부담이 가중됨
 - 기 시행된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을 전부개정한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
 - 소각·매립량 감축 및 재활용률 증가를 위한 인건비 상승과 폐기물 선별기 도입 등 제반 비용이 수반되나 코로나19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추가투자는 불가능한 상황
 -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폐기물 감축 인프라 및 재활용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제도가 연장될 경우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난 가중 우려
- 본 보고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 연장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,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 -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도입 목적,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, 특히, 규제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 규정된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면밀히 파악
 -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도입 이후 지난 5년 간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률 증가 효과와 해외사례, 기존 제도 간의 비교를 통하여 규제의 필요성 검토
 -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연장으로 인한 규제 순응도를 살펴본 후, 이와 연관된 규제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

2. 규제현황

- 국제적인 ‘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’을 화두로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이 제정됨
 - 폐기물처분부담금은 「자원순환기본법」에 따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(2018년 1월 1일 시행)*
 - *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 존속기한은 10년 이내로 설정하며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정 당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시적으로 규정
 -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에게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이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

-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 연장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은 규제 부담을 우려
 - 앞서 제정된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을 전부개정된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(2028년 1월 1일까지)¹⁾
 -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과 더불어 세입 확충 관련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부담을 예상

- 동 제도는 중소기업 감면 기준을 규정하였으나, 감면 구조가 단순히 이원화된 체계
 - 주요 감면대상 4개 항목을 살펴보면 ㉠ 자가 매립 후 재활용, ㉡ 소각열에너지회수, ㉢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, ㉣ 중소기업 등으로 구분²⁾
 - 특히, ㉣ 중소기업 감면 기준을 살펴보면, 감면구간이 연간 매출액 ‘10억 원 미만’ 또는 ‘10억 원~120억 원 미만’으로 단순히 이원화된 구조이므로 감면대상이 제한됨

1) 폐기물처분부담금은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49조(규제의 존속기간 및 재검토키한), 부칙 제1조(시행일)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짐(국가법령정보센터, 검색일 2023.1.20.)

2) [부록 1] - 폐기물처분부담금 개요 참조

3. 규제 연장 필요성과 순응도

가. 규제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

■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 후 매립·소각률은 하락, 재활용률은 상승함을 고려할때 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충분

- 최근 5년 간 국내 매립+소각률은 15.0%→10.3%로 매립률 3.7%p, 소각률 1.0%p 각각 하락하였고, 재활용은 84.8%→87.4%로 2.6% 상승(환경부, <표 3-1>참조)
- 매립·소각률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,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제도 시행에 대한 효과를 보다 장기적으로 관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

<표 3-1> 국내 폐기물 매립·소각 및 재활용률 현황(2016~2020)

구분	'16	'17	'18	'19	'20	증감폭(16/20)
매립	8.8	8.3	7.8	6.1	5.1	△3.7%p
소각	6.2	6.1	5.9	5.2	5.2	△1.0%p
재활용	84.8	85.4	86.1	86.5	87.4	2.6%p
기타	0.2	0.2	0.2	2.1	2.3	2.1%p
총계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-

(단위 : %)

자료: 국무조정실(2022), 「자원순환기본법」 개정안 예비심사 검토서,

■ 국내외 매립률과 매립세액을 비교한 결과, 한국은 매립률이 5배 이상 더 높은 반면, 매립세액은 1/9수준인 것으로 분석

- 국내 매립률은 5.1%인 반면, 덴마크, 핀란드, 스웨덴의 경우 매립률을 약 1% 미만이며, 노르웨이는 국내의 절반수준인 2.3%로 파악
- 해외 국가들은 1990년대 초부터 매립세를 도입해 거의 매립률 제로화(0%)를 달성했으나, 국내의 경우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아 장기적인 효과를 살펴볼 필요

<표 3-2> 국내외 매립률 및 매립세 현황 비교

구분	국내	해외				
		평균	덴마크	핀란드	스웨덴	노르웨이
매립률(%)	5.1	1.0	0.9	0.5	0.4	2.3
매립세액(원/kg)	10	90	107	94	69	2015년 폐지

주: 매립세액 중 해외 매립세액의 경우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원단위로 환산

자료: 국무조정실(2022), 「자원순환기본법」 개정안 예비심사 검토서,

■ 폐기물·재활용 관련 제도와 비교한 결과, 제도마다 부과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원칙상 중복과세는 아님

• 현행법상 폐기물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,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* 대상 품목일 경우 재활용분담금을, EPR 이외 품목은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

- EPR제도 중 재활용분담금이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활용사업공제 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재활용 의무 미이행 시 재활용을 위한 소요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
-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사용 후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에서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생산자에게 부과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제도를 말함

* 생산자책임재활용(EPR :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) : 제품·포장재의 제조업자 등에게 그 제품 등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 회수·재활용의무를 부여·미 이행 시 부과금 부과

〈표 3-3〉 폐기물·재활용 관련 제도 비교

구분	폐기물부담금	생산자책임재활용(EPR)제도	폐기물처분부담금
목적	•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 등이 어려운 제품재료·용기의 제조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	• 제품·포장재의 제조·수입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회수·재활용의무를 부여 • 미 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	•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(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)에게 부담금을 부과
시행	1993년	2003년	2018년
근거	「자원재활용법」제12조	「자원재활용법」제16조	「자원순환기본법」제21조
대상 품목	<p>〈 7개 품목〉</p> <p>①살충제유독물 용기 ②검 ③부동액 ④1회용 기저귀 ⑤담배 ⑥플라스틱제품(36개 업종) ⑦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('22년~)</p>	<p>〈 포장재 4개 품목〉</p> <p>①종이팩 ②유리병 ③금속캔 ④합성수지 포장재</p> <p>〈 제품군 8개 품목〉</p> <p>①전자류 ②타이어 ③윤활유 ④형광등 ⑤양식용 부자 ⑥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⑦김발장 ⑧세탁비닐, 1회용 비닐장갑 등 비닐 5종</p>	<p>〈부과대상 분류〉</p> <p>1. 생활폐기물 2. 사업장폐기물 3. 건설폐기물</p>
산정 방식	전년도 제조·수입 실적 × 품목별 요율 × 부담금산정지수 -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	(전년도 미이행재활용의무량 ×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 × 재활용비용산정지수) + (미이행가산금) -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	폐기물 소각·매립처분량(kg) × 요율(원/kg) × 산정지수 -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

자료 : 국무조정실(2021), 「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예비심사 검토서」

나. 중소기업 규제 순응도

■ 피규제대상자는 폐기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3만개로서 제조업(62.3%) 가운데 1차 금속 제조업(44.0%)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
-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을 보면, 제조업 62.3%, 수도,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 16.2%, 전기,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 12.8%를 각각 차지
- 제조업을 세부적으로 보면, 1차 금속 제조업이 44.0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.1%, 식료품 제조업 2.7%,순으로 나타남³⁾

■ 관련 업계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도입 취지인 경제적 유인책과 달리 폐기물 처리 비용 이외에 추가로 약 10%가량의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어 이를 준조세로 인식

- 소각·매립 시 위탁처리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음에도 폐기물 처리량에 비례하여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바, 부담금이 비용부담으로 작용
 -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이외에 폐기물부담금으로 약 10% 이상의 비용을 추가·납부하므로 소각·매립비용이 재활용 비용보다 큰 업종의 경우 제도상 실익을 누리기 부족한 현실임
 - 섬유염색업체의 경우 국내외 섬유경기 침체로 가동률이 급감하는 가운데 원자재가격 인상과 납품단가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

〈표 3-4〉 폐기물 처리비용 구조

폐기물 처리비용	=	위탁처리비용		+	폐기물처분부담금	
		소각(원/kg)	매립(원/kg)		소각(원/kg)	매립(원/kg)
		200	300		10~30	10

자료: 중소기업중앙회(2022), 「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일몰 도래에 따른 전면 재검토 건의」

〈관련업계 의견 - 원자재 가격 인상 및 납품단가 하락 사례〉

- 염색업체 공정상 필수 사용 스팀 단가 와 염색업체 평균 납품단가 국내외 섬유경기 침체로 지속 하락
- 염색업체 공정상 필수 사용 스팀 단가 인상

구분	2021년 6월	2022년 6월	인상율
스팀공급 단가	34,000원/Ton	70,000원/Ton	105.9%

- 염색업체 평균 납품단가 국내외 섬유경기 침체로 지속 하락

구분	2019년	2021년	인상율
평균 납품단가	405원/yds	360원/yds	△12.5%

자료 : 중소기업중앙회(2022), 「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 입법예고 관련 중소기업계 건의」

3) [부록 2] -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업종별 발생량 참조

4. 중소기업 규제개선

■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, 규제부담 완화 방안 모색이 시급

- 이에 기존의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① 감면 기준 세분화와 ② 감면구간 확대 및 ③ 부과율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

■ ① (중소기업 감면 기준 세분화) 현행법상 감면 기준의 '문턱효과'를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줄여 규제부담을 완화

- 중소기업 감면 기준을 살펴보면, 연 매출액 '9억 원'과 '10억 원' 구간의 경우 그 차이가 1억 원에 불과하나, 감면율은 무려 50%나 차이가 존재하는 등 감면대상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규제 형평성이 다소 결여됨
- 현행법상 이원화된 체계에 따라 감면대상이 획일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'문턱효과(threshold effect)⁴⁾ 해소차원에서 감면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
 - 예를 들어,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금융회사가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 도입⁵⁾
- 개선안은 연 매출액 '10억 원~50억 원'→ 90%, '50억 원~100억 원'→ 80%로, '100억 원~120억 원'→ 70%로 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감면 구조 개선을 제시함

■ ② (중소기업 감면 구간 확대) 감면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물가상승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제 여건 및 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감면 기준 현실화

- 현행법상 중소기업 감면대상은 '연 10억 원 미만'과 '1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'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⁶⁾ '소기업'으로 한정되어 있고 '중기업'은 제외되어 있음으로 중소기업 감면제도에 부합하지 않음

4) 문턱효과란 본래 문지방을 넘을 때 일정한 높이 이상 발을 들어 올려야 넘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, 일정한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면제 또는 감면 대상 등으로 부터 제외되어 제도상의 효과를 누리지 못함을 말함

5)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(신용등급→신용점수)의 경우,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,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신용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여 기준을 세분화함 (보도자료, 금융위원회, 2020.7.30).

6)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(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) : 주요 제조업종 등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 120억 원 이하 소기업으로 분류

-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도입 된 지 5년이 경과했고, 3고 현상에 따른 경기 침체와 기업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해 매출액 구간을 확대·조정할 필요가 있음
 - 예를 들면, 기 규정된 폐기물부담금⁷⁾ 등 타법사례와 기업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연 매출액 ‘120억 원~200억 원’→60%, ‘200억 원~300억 원’→ 50%로 연 매출액 구간을 확대·조정
- 다만, 연매출액이 클수록 사업장폐기물배출량도 함께 증가할 경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도 비례하여 부과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연 매출 구간 확대를 통한 감면 기준 현실화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

〈표 4-1〉 중소기업 감면대상 세분화 및 확대(예시)

현행법		개선(안)	
연 매출액 구간	감면율(%)	연 매출액 구간 ¹⁾	감면율(%)
10억 원 미만	100	10억 원 미만	100
① 감면기준 세분화	-	10억~50억	90
	-	50억~100억	80
1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	50	100억~120억	70
② 감면 구간 확대	-	120억~200억	60
	-	200억~300억 ²⁾	50

주: 1) 세분화 - 개선(안)의 연 매출액 구간은 기업생멸행정통계(연 매출액 규모별 기업 수)를 참조
 2) 확대 - 개선(안)의 연 매출액 구간은 폐기물부담금제도 중소기업 감면 기준을 참조

〈표 4-2〉 폐기물부담금제도 중소기업 감면 기준(참고)

연매출 구간	2017~2019	2020~2021
30억 미만	100%	70%
30억~100억	70%	60%
100억~200억	60~70% ¹⁾	45~60% ²⁾
200억~300억	33~50% ³⁾	-

1) 전체 매출액 중 100억 원 이하인 구간은 감면율 70% 적용, 100억 원 초과하는 구간은 감면율 50% 적용
 2) 전체 매출액 중 100억 원 이하인 구간은 감면율 60% 적용, 100억 원 초과하는 구간은 감면율 30% 적용
 3) 전체 매출액 중 200억 원에 대해서만 감면율 50% 적용
 자료 : 환경부(2020), 「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·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」

7) 「자원재활용법 시행령」제11조(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)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매출액 구간별 감면 기준을 정함

■ ③ (부과요율 형평성 제고)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간 동일한 성질과 상태 등에 해당할 경우 동일요율을 부과하는 방안

- 현행법상 가정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15원/kg의 요율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
 - 그러나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동일한 성질과 상태 이고,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매립함에도 불구하고 25원/kg의 요율을 부과
 - 따라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부과요율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부과요율 형평성 제고가 필요(25원/kg→15원/kg)

■ 부과요율 조정 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 연장기간(5년)동안 비용절감효과에 대한 연평균 순비용 현재가치를 산출한다면, 약 356.7 백만 원으로 추정

〈표 4-3〉 연평균 비용 절감효과 산출근거

구분	세부사항					
비용항목 식별 및 피규제대상 규모(통계)	• 규제비용 : 사업장비배출시설계 가연성 매립 폐기물에 대한 부과요율 감소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절감액을 추정(부과요율: 25원/kg→15원/kg) •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가연성 매립 폐기물량(추정치, 가정의 연평균증가율(CAGR)이용					
	구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'27년
	폐기물매립량(톤)	20,171.0	25,090.3	31,209.3	38,820.5	48,288.0
	요율	1.074	1.090	1.106	1.121	1.138
산식	• (1년차) 20,171,000kg*10원/kg*1.074 = 216,636,540원 • (2년차) 25,090,300kg*10원/kg*1.090 = 273,484,270원 • (3년차) 31,209,300kg*10원/kg*1.106 = 345,174,858원 • (4년차) 38,820,500kg*10원/kg*1.121 = 435,177,805원 • (5년차) 48,288,000kg*10원/kg*1.138 = 549,517,440원					
분석가정	(가정1) 주어진 자료에 따라 '23~'27년의 폐기물매립량과 요율을 추정(연평균증가율)					
	구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	폐기물매립량*(톤)	6,773.9	8,792.6	10,480.8	-	-
	요율	1	1.019	1.023	1.024	1.059
	* 사업장비배출시설계 가연성 매립처분 폐기물의 양(자원순환정보시스템)					
	(가정2)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은 추산 불가로 분석에서 제외					
연간순비용 현재가치 추정 (사회적 할인율 4.5%, 분석기간 5년)	(단위 : 백만원)					
	구분	순비용	순비용현재가치	연평균 순비용현재가치		
	1년차	216.6	216.6			
	2년차	273.5	261.7			
	3년차	345.2	316.1			
	4년차	435.2	381.3			
	5년차	549.5	460.8			
계	1,820.0	1,636.6	356.7			

자료: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부자료

5. 시사점

-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 연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규제부담을 우려하는바, 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규제부담 완화를 추진해야 함
 -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도입 이후 매립·소각률 4.7%p 하락, 재활용률 2.6%p 상승했기 때문에 제도 효과에 대한 연속성 제고차원에서 일정기간 존속이 필요
 - 선진국은 경우 일찍이 매립세를 도입·장기적으로 시행하여 평균적으로 매립률을 1.0% 수준까지 낮춘 반면, 국내 매립률은 5.1%로 약 5배 더 높음
 - 관련 업계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이외 추가로 약 10%가량 부담금을 소요하므로 본래 도입 취지인 경제적 유인책과 달리 ‘준조세’로 인식하는 실정
- 기 규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고 부과요율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현실화함이 바람직
 - 중소기업 감면 기준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의 이원화된 감면체계 구조를 개선하여 감면대상으로부터 제외될 가능성을 줄이고 규제부담을 완화
 - 중소기업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감면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 및 기업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감면 기준 현실화
 - 부과요율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간 동일한 성질과 상태 등에 해당할 경우 동일요율을 부과한다면 연평균 약 356.7백만 원의 비용 절감효과 추정
-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중소기업 감면 기준 개선과 더불어 기 규정된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기여
 -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의 경우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고 ‘1회용품 없는 날’ 등 탈플라스틱 실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폐기물 감축에 기여
 - 소각열 에너지 회수 감면 기준 개선을 통해 에너지 재활용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이행 제고
 -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폐기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재생, 재활용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모색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

참고자료

- 국무조정실(2021), 「「자원재활용법」 개정(안) 예비심사 검토서」.
- 국무조정실(2022), 「「자원순환기본법」 개정(안) 예비심사검토서」.
- 국민참여입법센터(2022), 「「자원순환기본법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규제영향분석서」.
- 금융위원회, 「21.1.1.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업권별 준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」, 보도자료(2020.7.20.).
-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(시행 2025.1.1.) [법률 제19208호, 2022. 12. 31., 전부개정], <https://www.law.go.kr/lsSc.do?section=&menuId=1&subMenuId=15&tabMenuId=81&eventGubun=060101&query=%EC%9E%90%EC%9B%90%EC%88%9C%ED%99%98%EA%B8%B0%EB%B3%B8%EB%B2%95+%EC%8B%9C%ED%96%89%EB%A0%B9#undefined> (검색일 : 2023.1.20.)
- 심우현(2018), 「중소기업 규제 차등화」, 『경제·인문사회연구회』, 한국행정연구원
-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을 전면개정한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2024년부터 시행, (법률신문, 2023.01.12.)
-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, 「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」, (검색일 : 2023. 1.20).
- 환경부(2018), 「폐기물처분부담금 해설서」,
- 환경부, 「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...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」, 보도자료(2020.4.7.).
- 환경부(2021), 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[2020년도 기준]」.
- 환경부,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회 통과」, 보도자료(2022.12.28.).

부록

[부록 1] 폐기물처분부담금 개요

구분	세부사항			
부과대상 폐기물	1.생활폐기물	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2호)		
	2.사업장폐기물	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)		
	3.건설폐기물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(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)		
부과대상 처리방법	소각	① 일반소각시설, ② 고온소각시설, ③ 열 분해시설 ④ 고온 용융 시설, ⑤ 열처리 조합시설		
	매립	① 차단형 매립시설, ② 관리형 매립시설 단,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* *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3제2항제1호		
감면대상	구분	세부사항	감면비율(%)	
	①자가 매립 후 재활용	매립한 연도의 12월31일까지 재활용	100	
		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	50	
	②소각열에너지회수	75% 이상 회수하여 이용	75	
		60% 이상, 75% 미만 회수하여 이용	60	
		50% 이상, 60% 미만 회수하여 이용	50	
③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	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·재료·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	100		
④중소기업	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	100		
	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	50		
①~④이외의 경우 100%감면(⑤자정폐기물,⑥섬 지역 폐기물,⑦재난폐기물,⑧매립시설 정비,⑨불법폐기물처분)				
납부 의무자	생활폐기물	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		
	사업장폐기물	「폐기물관리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		
부과유형	요율			
	1.생활폐기물	매립하는 경우	소각	
		kg당 15원	kg당 10원	
	2.사업장 폐기물	불연성	kg당 10원	-
		가연성	kg당 25원	kg당 10원
3.건설폐기물	kg당 30원	kg당 10원		

자료 : 한국환경공단, <https://www.keco.or.kr/>(검색일:2023.1.20.)

[부록 2]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별 발생량

(단위: 만 톤/년, %)

구분	분 류	발생량	구성비
A	농업, 임업 및 어업	17	0.2
B	광업	114	1.4
C	제조업 합계	5,035	62.3
C(10)	식료품 제조업	218	2.7
C(11)	음료 제조업	31	0.4
C(12)	담배 제조업	2	0.0
C(13)	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	12	0.2
C(14)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0.2	0.0
C(15)	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9	0.1
C(16)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	62	0.8
C(17)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213	2.6
C(18)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3	0.0
C(19)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8	0.1
C(20)	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193	2.4
C(21)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7	0.1
C(22)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36	0.5
C(23)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411	5.1
C(24)	1차 금속 제조업	3,557	44.0
C(25)	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34	0.4
C(26)	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88	1.1
C(27)	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1	0.0
C(28)	전기장비 제조업	16	0.2
C(29)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19	0.2
C(30)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45	0.6
C(31)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34	0.4
C(32)	가구 제조업	7	0.1
C(33)	기타 제품 제조업	28	0.3
C(34)	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0.1	0.0
D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	1,038	12.8
E	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	1,313	16.2
F	건설업	156	1.9
G	도매 및 소매업	29	0.4
H	운수 및 창고업	6	0.1
I	숙박 및 음식점업	2	0.0
J	정보통신업	1	0.0
K	금융 및 보험업	1	0.0
L	부동산업	22	0.3
M	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50	0.6
N	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36	0.4
O	공공 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216	2.7
P	교육 서비스업	0.3	0.0
Q	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2	0.0
R	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3	0.0
S	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48	0.6
T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	0	0.0
U	국제 및 외국기관	0	0.0
	총 합 계	8,087	100.0

KOSI 중소기업 포커스

발행인 : 오동윤

편집인 : 최세경

발행처 : 중소벤처기업연구원

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(신대방동 686-70) (07074)

전화: 02-707-9800, 팩스: 02-707-9894

홈페이지: <https://www.kosi.re.kr>

인쇄처 : 주식회사 위드원커뮤니케이션

■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(연구진)의 견해이며,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■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